#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용만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364

발의연월일: 2024. 6. 12.

발 의 자:김용만・이훈기・복기왕

김용민 • 이병진 • 모경종

이용우 · 김태년 · 박선원

이광희 • 이인영 의원

(11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거나, 특정 범죄를 범하여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률」의 적용 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 등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 다고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친일반민족행위자의 경우 국가를 위해 희생·공헌하지 않았음에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있어 아직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이 국립묘지에 안장되어 있고, 이들의 유골이나 시신을 이장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이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중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

람을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, 국가보훈부장관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국립묘지의 영예와 존엄을 지키려는 것임(안 제5조제5항제5호, 제7조제3항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5조제5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

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 제5조 제5항제5호에 해당하여 안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족에게 그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

제10조제1항제3호 중 "제5조제5항제5호"를 "제5조제5항제5호·제6호" 로 한다.

제11조제2항제3호 중 "제5조제5항제5호"를 "제5조제5항제6호"로 한다. 제16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7조제3항에 따라 국립묘지에 안치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

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. 다만,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.

제21조의2제2항제2호 중 "제5조제5항제5호"를 "제5조제5항제6호"로 한다.

#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안장대상자 제외 및 이장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5항 및 제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국립묘지에 매장되거나 안치 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		
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	제5조(국립묘지별 안장 대상자)			
① ~ ④ (생 략)	① ~ ④ (현행과 같음)			
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			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			
사람은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				
없다.				
1. ~ 4. (생 략)	· 1. ~ 4. (현행과 같음)			
<u> </u>	5. 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			
	상규명에 관한 특별법」 제2			
	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		
	하는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것			
	으로 결정된 사람 중 제10조			
	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			
	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			
	한다고 인정한 사람			
<u>5.</u> (생 략)	<u>6.</u> (현행 제5호와 같음)			
⑥・⑦ (생 략)	⑥·⑦ (현행과 같음)			
제7조(이장) ①・② (생 략)	제7조(이장) ①・② (현행과 같			
	승)			
<u>&lt;신 설&gt;</u>	③ 국가보훈부장관은 국립묘지			
	에 매장되거나 안치된 사람이			
	제5조제5항제5호에 해당하여			
	안장 대상자에서 제외된 경우			

제10조(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등)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에 안장대상심의위원회(이하 "심의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
- 1. 2. (생략)
- 3. <u>제5조제5항제5호</u>에 따른 국 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

3의2. ∼ 6. (생 략)

② ~ ⑥ (생 략)

제11조(안장 신청 등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후 (死後)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(生前)에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

	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	<u> </u>
	에 따라 유족에게 그 유골이니	<u>}</u>
	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료	<u>-</u>
	이장하도록 명하여야 한다.	
제	10조(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설	j
	치 등) ①	_
		_
		_
	1. · 2. (현행과 같음)	
	3. <u>제5조제5항제5호 · 제6호</u>	_
		-
	3의2. ~ 6. (현행과 같음)	
	0, (2,0) 2,1	
	② ~ ⑥ (현행과 같음)	
제		7
제	② ~ ⑥ (현행과 같음)	}
제	② ~ ⑥ (현행과 같음)  11조(안장 신청 등) ① (현행고	}
제	② ~ ⑥ (현행과 같음)  11조(안장 신청 등) ① (현행교 같음)	} - -
제	② ~ ⑥ (현행과 같음)  11조(안장 신청 등) ① (현행교 같음)	<del>-</del>
제	② ~ ⑥ (현행과 같음)  11조(안장 신청 등) ① (현행교 같음)	} - -
제	② ~ ⑥ (현행과 같음)  11조(안장 신청 등) ① (현행교 같음)	} - -
제	② ~ ⑥ (현행과 같음)  11조(안장 신청 등) ① (현행교 같음)	<del>}</del>
제	② ~ ⑥ (현행과 같음)  11조(안장 신청 등) ① (현행교 같음)	ት 
제	② ~ ⑥ (현행과 같음)  11조(안장 신청 등) ① (현행교 같음)	<b>}</b>

청할 수 있다.

- 1. 2. (생략)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제5조제5항제5호에 따른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할 것
- ③ · ④ (생 략)

제16조(안장비용) ① (생 략)
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유족이 부담한다.
- 1. 2. (생략)

<신 설>

제21조의2	(자료	등의	제출	요청)
① (생	략)			

② 국가보훈부장관 또는 국방 ② -----

 1.·2. (현행과 같음) 3
<u>제5조제5항제6호</u>
 ③·④ (현행과 같음) 제16조(안장비용) ① (현행과 같음) 음)
에 안치된 사람의 유골이나 시신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 용. 다만, 유족이 없는 경우에 는 국가가 그 비용을 부담한 다.
<u></u> <u>다.</u> 제21조의2(자료 등의 제출 요청) ① (현행과 같음)

부정	) 관은	다음	각	호의	심사
또는	: 조사	를 위	하여	관계	기관
의	장에거	] 범조	계경력	자료•	네 대
한 :	조회 3	오청을	할 ~	수 있다	1.

- 1. (생 략)
- 2. <u>제5조제5항제5호</u>에 따른 국 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 조사
- ③・④ (생 략)

· (=1=1=1=1=1=0)
1. (현행과 같음)
2. <u>제5조제5항제6호</u>
③·④ (현행과 같음)